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299
----------	------

2020.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5일 정재웅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3.6.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정재웅 의원)

### 1)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18.12.18. 개정, '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안 제10조, 제11조)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안 제12조)

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3조~제16조)

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제19조)

###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18.12.18. 개정, '19.12.19.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 2월 5일 정재웅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조례안의 구성은,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안 제5조~제7조)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안 제8조~제12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3조~제16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안 제17조~제19조) 등 총 1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등<sup>1)</sup>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발주방식·공간구성·운영계획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을 신설하여 공공기관<sup>2)</sup>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sup>3)</sup>에 건축기획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sup>4)</sup>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함.

1) 건축물과 공간환경 (법 제2조제1항제1호)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 제2조제1항제5호)

3)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법 제2조제1항제6호)

4) 사전검토 의무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

\* 설계비 추정: 공사비 요율 적용(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750호, 별표4)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은 사업 규모·내용·기간·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계획과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토록 하고,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관련법규 참고, 붙임4) 중 ‘기본구상’과 ‘공사수행방식 결정’을 건축기획으로 대체토록 함.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은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에 따른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등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타당성 조사 대상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사전검토는 국가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수행토록 하고<sup>5)</sup>, 광역 또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센터는 사전검토 외에도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생략토록 함.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심의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건축기획의 사전검토 및 심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이 외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됨.

---

5) 법 개정 전에는, 설계비 2억 1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에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나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등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 설계비 2억 1천만원 이상 정도이면 투자심사(사업비 30억원 이상)를 받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의뢰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지정되어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공공 건축	건축기획	건축기획 사전검토	건축기획 심의
대상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비 1억원 이상 (타당성 조사 대상, 센터 기획 대상은 제외)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수행 주체	공공기관(사업부서)	국가 또는 지역 센터(국토 교통부 승인 필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건축위원 회가 대신할 수 있음)
수행 기간	-	30일	(법적 기준은 없으나 약 2 주 예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자원조달계획 등</li> <li>·발주방식에 관한 사항</li> <li>·디자인관리방안</li> <li>·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 능성 제고방안</li> <li>·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 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 화 방안</li> <li>·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방안</li> <li>·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 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li> <li>·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li> <li>·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 요 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li> <li>·기타 필요한 사항</li> </ul>	사업계획서(건축기획이 주 요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지침서·과업내용서 적정성</li> <li>·사전검토 의견 또는 타당 성 조사 결과의 반영여부</li> <li>·건축기획 적정성 등</li> </ul>
요청	(기본계획 수립 단계)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
통보	-	접수 후 30일 이내	(2주 정도로 예상)
반영 통보	-	착공 전에 센터로 통보	-
관련 규정	법 제22조의2 영 제19조의2	법 제23조 영 제20조	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영 제19조의3, 제19조의4

※ 관련 프로세스는 <붙임1> 참고

“건축기획” (안 제10조~제11조)

- 건축기획의 내용과 수행 등은 법령의 해당 사항을 대체로 인용하였으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의뢰대상에서 국가·지역 센터를 제외하고 전문가만 규정하였고, 서울시 센터의 업무 범위에도 (안 제18조) 건축기획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축기획 의뢰대상
법 (제22조의2)	-국가 또는 지역 센터(국토교통부 승인 필요) -시행령에 따른 전문가
시행령 (제19조의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건축·도시·조경 등의 부교수 이상)
조례안 (안 제11조)	시행령에 따른 전문가와 동일

- 지역 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안에서 해당 사항을 제외한 것은, 시행령에6) 규정된 최소 규모로 서울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업무인 사전검토만 수행하고 건축기획 업무까지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임.
-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적합한 전문가에 의뢰하여 건

6)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가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축기획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업 전반의 일관성 등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부서의 여건 또는 절차적 효율성(센터가 건축기획을 수행할 경우, 사전검토 생략) 등에서 경우에 따라 서울시 센터에 건축기획을 의뢰하는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수요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는 서울시 센터에서도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심의 수요(자료: 도시공간개선단)

설계비 추정가		연 평균 (단위: 건)				
		계	시	산하기관	자치구	
계		792	154	5	633	
건축 기획	5천만원 이하		702	121.5	3.5	577
	건축 기획 심의	5천만원~1억원	34	10	1	23
		사전검토    1억원 이상	56	22.5	0.5	33

### “사전검토와 서울시 센터 운영” (안 제12조, 제17조~제19조)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설계비(추정가)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의 사전검토를 서울시 센터에서 수행토록 하고, 시행령(제20조)을 인용하여 사전검토의 요청시기(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및 사전검토 의견 활용계획 통보시기(착공 전)를 규정하되, 서울시 센터에서 별도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활용계획을 통보토록 하고<sup>7)</sup>, 사전검토의 구체적인 절차·검토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
-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지역 센터는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전담

7) 예를 들어, 주변 연계(도시적 맥락, 단지의 컨텍스트 등)가 설계의 주요 포인트일 경우, 설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검토 활용계획 통보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함

조직을 구성하되,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을 3명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3명의 전담조직과 자문위원단으로 센터를 구성할 계획으로서(붙임2) 이 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반영함.

- 서울시 센터는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규모로 사전검토 업무 위주로만 계획되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건축기획 의뢰 수요에 따라 센터의 확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3조~제16조)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기본법에 의한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는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주요 건축정책 및 제도, 현안 등을 주로 자문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제1분과위원회(정책·제도) 및 제2분과위원회(현안시책사업) 외에 제3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건축기획 심의를 수행토록 할 계획임(붙임3).
- 이 조례안에서, 건축기획 심의대상은 사전검토 대상과, 타당성 조사로 사전검토를 대신한 경우<sup>8)</sup>, 사전검토 제외대상(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을 구분하여 각각 심의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사전검토 대상과 타당성 조사 대상은 검토 또는 조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주로 심의토록 한 반면, 사전검토·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8) 국가재정법(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본문)에 의한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는, 공공건축의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시행령 제20조제1항)

심의토록 함.

사전검토 대상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사항 등이 심의되고 이후에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 활용계획을 센터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 그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구조이나, 이 외 심의대상은 심의 결과의 반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필요시에는 사전검토 비대상에 한하여 심의결과의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기 타” (안 제5조~제9조)

- 법령 개정사항인 건축기획, 사전검토, 건축기획 심의 등의 사항 외에도, 이 조례안은 법령에 기반하여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품격 제고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설계의도 구현 등을 규정함.
-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하여 법령을 토대로<sup>9)</sup>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안 제5조) 서울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연구 수행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19.5.)<sup>10)</sup> 이행 사항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협약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연구기관과 서울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들이 심도있게 연구되어 서울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9) 관련 법 제9조, 영 제7조

10) 협약 내용 :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류,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등의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안 제6조)<sup>11)</sup>,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항은 없으나, 향후 관련 정책·사업 수립의 여지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공공건축 발주·설계공모 기준은(안 제8조), 법령<sup>12)</sup>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설계발주 기준 및 설계공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기준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반면, 서울시에서는 설계비 1억원 미만의 설계공모도 시행 중이고 디지털심사장도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고시의 보완적 재량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됨.
- 설계의도 구현에 관해서는(안 제9조)<sup>13)</sup>,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가 건축과정에서 왜곡 또는 축소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법이 제정될(‘13. 제정, ’14. 시행) 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토록 해왔으나<sup>14)</sup> 서울시에서는 단 2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sup>15)</sup> 파악됨. 법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성실한 법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고, 실정과 괴리된 규정이라면 서울시의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1) 관련 법 제13조, 영 제11조

12)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 반영

13) 법 제22조 및 영 제19조 반영

14) **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이번 법령 개정 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설계비 2억 1천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토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토록 함

15)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대가는 설계비 8% 수준으로 지급

-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안 제7조) 법령에 기반하여<sup>16)</sup>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되 서울특별시건축상 수상자도 대상에 추가하였고, 서울시의 설계공모시 공모 대상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법령 및 이 조례안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우선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은 건축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설계공모 대상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설계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모대상을 제한토록 해야 할 것임.

## “중 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은, 공공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건축기획을 강화하여 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조례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토대로 서울시 여건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공공건축 사업에서 건축기획 관련 사항이 또 하나의 절차 추가로 인식되지 않고 그 효용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16) 법 제13조, 영 제11조 반영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

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

2.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 수상자

② 시장은 공모의 방법으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공모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3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8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

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기타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건축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시장등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공사시행계획
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재,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 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등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한다.

②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요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활용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13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서울특

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간사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준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축기획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제1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